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보호와 상황의 안정적인 대응을 위하여 의료현장의 의료인력은 필수사항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 면허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인 면허시험 공고기간 단축 내용 신설(안 제4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u>
<u><신 설></u>	<u>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02 - 2437